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10월 20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학교 간 규모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 통폐합이나 학급 축소가 불가피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교육 여건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지원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3조의 “마련하도록”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으로 변경하여, 교육감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학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형평성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여 학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활히 시행되어 서울시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